

2024 세법 이론노트(이승철·박지섭 저, 나무경영아카데미) 추록 및 정오표 - 3. 20. 현재

세법 시행령 확정 과정에서 1쇄에 반영되어 있는 시행령 초안 다르게 변경된 사항, 2024년 2월 28일에 입법예고된 세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중 주요사항 및 교재 출간 후 발견된 수정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표현방식의 단순한 변화 등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수험목적에 고려하여 생략하였습니다.

I. 시행령 확정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반영사항(1쇄에만 반영요망, 2쇄에는 이미 반영되었음)

1. 법인세

Page	행	수 정 전	수 정 후
2장-12	상4	~ 이자율(2.9%)	~ 이자율(3.5%)
2장-30	상16	아래에 별도 기술함	
2장-31	상1	2-37 감자시 의제배당을 ~	2-37 자본의 감소로 인한 감자시 의제배당을 ~
	상5	~고려하여 감자시 의제배당은 ~	~고려하여 자본의 감소로 인한 감자시 의제배당은 ~
3장-10	상6	(2) 제재성 공과금: 폐수배출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1) (·:1. 법률상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고용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지급함)	(2) 제재성 공과금: 폐수배출부담금 [참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3장-27	상15	< 추 가 >	①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용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② 수목원 및 정원의 입장권 구입 ③ 궤도시설의 이용권 구입
11장-18	상16	(연결산출세액 - 조정 연결산출세액) ×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비율	결손금 조정세액 ×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비율
11장-19	상8	아래에 별도 기술함	
	하9	(2) ~ 조정 연결산출세액 × $\frac{\text{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1}}{\text{연결집단 전체 결손금}^{*2}}$	(2) ~ 결손금 조정세액 ×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비율
	하7	*1.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 :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연결이월결손금 제외) 중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한 금액 *2. 연결집단 전체 결손금 : 모든 연결법인의 위 *1.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합한 금액	< 삭 제 >
11장-20	상3	< 추 가 >	* 완전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 등을 포함)의 전부(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연결지배 판단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는 주식(㉞ 11장-2 쪽 ③에 해당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 2장-30쪽 (3) 적용배제 중 ⑥과 ⑦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⑥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

- a.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자본의 감소로 인한 감자시 의제배당에 한정함) 개정 (·:5) ...▶ 2-37
- b. 피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제배당 대상 아닌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 후 자기주식 이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지분비에 해당하는 무상주 의제배당 개정 (·:6) ㉞ 2장-17쪽

[참고] 감자시 의제배당 중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에 한정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배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자시 의제배당 사유에는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가 있으며, 주식의 소각,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의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합니다.

※ 법인세 11장-19 1)의 ④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④ 결손금 조정세액

$$\text{결손금 조정세액} = \text{연결산출세액} - \text{조정 연결산출세액}$$

⑤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 비율

$$\text{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 비율} = \frac{\text{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공제액}^{*1}}{\text{총 결손금 공제액}^{*2}}$$

- *1. 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공제액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결손금과 연결과세표준 계산시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공제한 연결이월결손금의 합계액
- *2. 총 결손금 공제액 : 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공제액을 모두 더한 금액

2. 소득세

Page	행	수 정 전	수 정 후									
2장-24	하9	<table border="1"> <tr> <td>(2) 감사시 의제배당</td> <td>○</td> <td>×</td> </tr> <tr> <td>(3) 해산·합병·분할시 의제배당</td> <td>○</td> <td>○</td> </tr> </table>	(2) 감사시 의제배당	○	×	(3) 해산·합병·분할시 의제배당	○	○	<table border="1"> <tr> <td>(2) 감사·해산·합병·분할시 의제배당</td> <td>○</td> <td>○</td> </tr> </table> (자본의 감소 의제배당은 ×)	(2) 감사·해산·합병·분할시 의제배당	○	○
(2) 감사시 의제배당	○	×										
(3) 해산·합병·분할시 의제배당	○	○										
(2) 감사·해산·합병·분할시 의제배당	○	○										
3장-7	상1	⑫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노무제공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⑫-1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⑫-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같은 법에 따라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4장-4	하4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이 얻은 이익은 제외함 a. 해당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와 국제기본법에 따른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자 b. 해당 중소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 다만, 해당 종업원이 중소기업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종업원이 얻은 이익은 제외함 a.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친족관계 b. 중소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관계									
4장-8	하11	① 사용자 등이 개인인 경우 : 사용자 등이 본인이거나 사용자 등과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자 ② 사용자 등이 법인인 경우 : 사용자 등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사용자 등의 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 자	a. 사용자등이 개인인 경우 : 친족관계 b. 사용자등이 법인인 경우 :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관계									
6장-12	상23	⑭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2024년 7월 19일 시행)	⑭ 가상자산거래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6장-12	상27	⑯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	⑯ 고향사랑 기부금(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									

3. 부가가치세

Page	행	수 정 전	수 정 후
1장-10	하17	*1. 간이과세자 : ~ 8,000만원에 미달하는 ~	*1. 간이과세자 : ~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
1장-15	하9	(∵ ~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여 ~)	(∵ ~ 매출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여 ~)
2장-4	하8	~ 공급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	~ 공급대가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3장-13	하7	1.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 등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	1.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
4장-28	상12	③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④ 그 밖에 ③과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국제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④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제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7장-2	상12	~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	~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
	상17	~ (다만, 사업의 양수 이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	~ (다만, 사업의 양수 이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
	상23	~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	~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인 ~
7장-4	상1	(2) ~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div style="text-align: center;"> <p>甲 사업자 (단위: 백만원)</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A사업장 (공급대가 50)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B사업장 (공급대가 50)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일반과세자</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일반과세자</div> </div> </div>	(2) ~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div style="text-align: center;"> <p>甲 사업자 (단위: 백만원)</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A사업장 (공급대가 60)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B사업장 (공급대가 60)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일반과세자</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일반과세자</div> </div> </div>
		상5	~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 ~
7장-5	하10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
	하5	~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7장-7	상15	* 간이과세 포기신고한 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①에 따른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 간이과세 포기신고한 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간이과세를 포기할 당시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①에 따른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7장-11	상5	~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	~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
7장-16	하15	~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	~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

(4) 상속세 및 증여세

Page	행	수 정 전	수 정 후
2장-25	상7	다음 연도 6월 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 이후인 경우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인 경우
	상9	* b를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2장-26	상8	*3. ~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	*3. ~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
3장-5	하2	임대보증금 + $\frac{\text{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1+3\%)^n}$ n : 평가기준일부터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까지의 잔여 기간	{임대보증금 + $\frac{\text{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1+3\%)^n}$ } × (1 - 기준경비율) n : 평가기준일부터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까지의 경과연수

* 상속세 및 증여세 2장-25 ②의 b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b. 그 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		소득세 상당액
	5,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14%
5,76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806만원+(초과배당금액-5,760만원)×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1,536만원+(초과배당금액-8,800만원)×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초과배당금액-1억 5,000만원)×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초과배당금액-3억원)×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 7,406만원+(초과배당금액-5억원)×42%
10억원 초과		3억 8,406만원+(초과배당금액-10억원)×45%

(5) 국세기본법

Page	행	수 정 전	수 정 후
국기법 6장-8	하8	* 법소정 부득이한 사유란 ~ 그 이후 해당 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법소정 부득이한 사유란 ~ 그 이후 인정 대상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그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II. 교재 오류 수정사항(1쇄에만 반영요망, 2쇄에는 이미 반영되었음)

Page	행	수 정 전	수 정 후
법인세 3장-35	상13	~ X2년 지출 1,500(한도 500)	~ X2년 지출 1,500(한도 2,000)
법인세 3장-43	하14		
법인세 7장-17	하8	특수 이외 자로부터 수령 → 미래손금	특수 이외 자로부터 수령 → 미래익금
법인세 10장-8	상11	~ 포함주식에 대한 간주교부주식	~ 포함주식에 대한 합병교부주식(간주교부주식 포함)
	상13	~ 포함주식에 대한 간주교부주식	~ 포함주식에 대한 합병교부주식(간주교부주식 포함)
법인세 10장-20	상2	②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
법인세 10장-35	상3	① 합병시 승계 × ~ < 추 가 >	① 합병시 승계 ×* ~ *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유보는 승계되므로 Tax 순자산 장부가액에 반영하지 않고, 적격합병시 승계되는 유보와 동일하게 처리함
소득세 2장-17	상16	~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고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소득세 3장-17	상16	< 추 가 >	<p>*4.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일반기부금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p> <p>(기존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 고향, 특례 및 우리나라주조합기부금 필요경비산입액)×30%</p>
소득세 4장-32	상13	<p style="text-align: right;">12.31.</p> <hr/> <p style="text-align: center;">보 상 금 3 ↓ 기타소득 3 비 과 세 (1)=5-4 과 세 액 2</p>	<p style="text-align: right;">12.31.</p> <hr/> <p style="text-align: center;">보 상 금 5 ↓ 기타소득 5 비 과 세 (3)=7-4 과 세 액 2</p>
소득세 7장-26	상11	(*2. 추가)	<p>*2.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일반기부금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p> <p>(기존소득금액-공제대상 정치, 고향, 특례 및 우리나라주조합기부금)×30%</p> <p>(기존 *2는 *3으로 함)</p>
소득세 10장-21	하5	1. 양도가액의 결정 : 실지취득가액	1. 양도가액의 결정 : 실지양도가액